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8 선고 2021가단2331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이하나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8. 11. 접수 제1231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12. 1. 접수 제1833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8. 7. 5.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26,800,000원, 보증기한 2023. 7. 4.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소외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2020. 7. 29. 보증번호 G,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한 2025. 7. 29.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C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소외 회사 및 C는 F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F은행에, 2021. 8. 31.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27,246,459원, 2021. 6. 30.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9,655,5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C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462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9. 8. “소외 회사, C는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22,546원 및 그 중 127,246,459원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1. 10.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2021. 10.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4124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8. 10. “C는 원고에게 9,655,538원 및 그 중 9,655,538원에 대하여 2021. 6. 30.부터 2021. 10.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2021. 10.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C는 2020. 8. 11.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8. 11. 접수 제1231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는 2020. 12. 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12. 1. 접수 제1833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연대보증채권 및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 및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F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연대보증채권 및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채무초과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조합, 인천신용보증재단,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48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C의 소극재산으로는 I조합 283,000,000원, 인천신용보증재단 39,000,000원, J은행 29,088,000원, F은행 86,632,000원, K은행 57,989,000원, 기업은행 25,000,000원, 주식회사 L 9,349,000원, 원고 137,600,000원 등 합계 667,658,000원 정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기에 C는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2020. 5. 31.경 재고자산 가치는 7,764,936,100원이었고, C는 소외 회사 지분의 49%를 가진 대주주였으므로 위 가치 또한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0. 5. 31.경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 가치가 7,764,936,100원이라는 피고 A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A가 주장하는 재고 관련 재산은 채권자가 용이하게 찾아내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동산 또는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도 갖고 있지 않는 등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자의 적극재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는 C의 요청에 따라 상표사용료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피고 A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상표사용료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정, C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동담보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A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 A가 제출한 증거,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A가 선의의 수익자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C의 추가 자금 유통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B로부터 자금을 새로 유통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C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한 상황에서 C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서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